



국제공인시험기관 일부인정분야 정지

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(시험·검사기관 인정)와 「공인기관인정 제도운영요령」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일부인정분야 정지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11년 12월 1일

한 국 인 정 기 구 장

기 관 명 : (주)휴먼패스

대 표 자 : 이 승 재

법 인 등 록 번 호 : 135111-0054084

사업자등록번호 : 123-81-61099

법 인 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4-4 현대드림씨티 8층

사 업 장 소 재 지 :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4-4 현대드림씨티 8층

유효 기 간 : 2008년 9월 4일 ~ 2012년 9월 3일

정 지 기 간 : 2011.12. 1 ~ 2012. 5.31 (공고일로부터 6개월)

일부인정정지분야 : 10.004. DNA형 검사

부 칙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